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94(2024.4.1.)호 대상 사업 중 유찰된 「국도17호선 여수 소라 덕양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4.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연번	건설엔지니어링명	과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비		평가방법	과업기간 (개월)
			전체	'24년		
1	국도17호선 여수 소라 덕양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 교차로 개선 1개소 * 교량 1개소/165m	792	259	PQ	18

- ※ 1. 건설엔지니어링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시행
- 2. 기타 정부의 계획 변경 및 교통수요 결과 등에 따라 사업계획(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3. 사업계획(사업비) 변경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당초 낙찰금액과 증·△감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나. 입찰 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다. 입찰 참여기술인 관련 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94(2024.4.1.)호로 공고된 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건설사업관리) 중 본 공고 사업(덕양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을 제외한 7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기술인은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 제2024-94호 7개 사업과 중복참여 시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업체 탈락)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일 전일(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기술부분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舊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 측량업,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종합심사낙찰제(기술적이행능력)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2.86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된 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4. 공동도급

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1.1.3.)에 따라 5개 업체 이하가 공동도급(단독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나.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1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불허).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만 참여 가능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3.12.28.)에 따릅니다.

6.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은 2024.4.18.(목)~4.25.(목)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www.molit.go.kr/irocm)에 게시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1) 제출일시 : 2024.4.25.(목) 13:30 ~ 16:30

(2)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본관 3층 소회의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3) 제출서류 목록

- ① 제출문서 1부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책자 2부(원본 1, 부분 1)
- ③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책자 6부(원본 1, 사본 5)
- ④ 이동식 저장매체(CD 또는 USB)에 저장된 파일 1개

(4) 유의사항

- ① 제출시한까지 도착(우리 청 접수장소 기준)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이후 도착한 일체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②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의 상대평가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라.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건설사업관리) 중 일부는 총사업비 협의 중인 예산으로 우선 발주하였으며, 추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상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조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 되면 이에 맞추어 계약변경 또는 타절 준공될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사. 사용언어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같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얻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도로계획과(☎063-850-9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합니다.

(2)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별도 회신문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당해 공고와 관련된 질의는 2024.4.24.(수) 17:00까지 가능합니다.